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직접 설치 시
50% 이상 비용 의무 지원〉
■ 정진욱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968호)

2024. 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직접 설치 시 50% 이상 비용 의무 지원 ..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진욱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8. 20.
3. 회 부 일 : 2024. 8. 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경제적 효과 및 국가·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고, 관련 투자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여 특화단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산업기반시설 관련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은 대규모 시설투자가 불가피한 장치산업으로서 전력·용수·폐수 등 산업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도, 현행법상 지원이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어 미국·중국·대만 등 주요국 대비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50퍼센트 이상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기반시설 설치를 촉진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직접 설치 시 50% 이상 비용 의무 지원 (안 제20조제3항 신설)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법 제20조제1항제1호1)에서 규정한 산업기반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50퍼센트 이상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려는 내용임(안 제20조제3항 신설).

[표 1]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특화단지 조성·운영 지원) ①·② (생 략) <u><신 설></u>	제20조(특화단지 조성·운영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1항제1호에</u>

1)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20조(특화단지 조성·운영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화단지 조성·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개정 2022. 12. 31.>

1. **특화단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반시설(천재지변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이중화 시설을 포함한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2. 그 밖에 특화단지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등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특화단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업 등이 참여하는 지원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⑤ 정부는 제1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지정되는 특화단지에 대하여 제1항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특화단지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⑥ (생략)	<u>따른 산업기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의 50퍼센트 이상을 지원하여야 한다.</u> ④ ~ ⑦ (현행 제3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신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20조²⁾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화단지 조성·운영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등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20조(특화단지 조성·운영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화단지 조성·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개정 2022. 12. 31.>

1. 특화단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반시설(천재지변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이중화 시설을 포함한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2. 그 밖에 특화단지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등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④ 특화단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업 등이 참여하는 지원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 ⑤ 정부는 제1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지정되는 특화단지에 대하여 제1항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⑥ 그 밖에 특화단지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 규정은 현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화단지 조성·운영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 등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한 규정으로서, 전략산업등³⁾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전력·용수 등 산업기반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기 위해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로도 해석·활용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22. 8. 4.) 이후 국가가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을 직접 조성·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23년 1,000억원, '24년 439억원 등 총 1,439억원이며,

이후 제정된 비용 지원의 구체적인 기준이 되는 하위법령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24. 8. 30. 제정)으로서 특화단지 업종 및 투자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총 사업비의 15~30%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⁴⁾.

[표 2] 특화단지 기반시설 국비 지원현황

3)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의미함.

4)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기준」은 전력·용수·폐수·도로·처리수 지하관로 등 5개 분야를 지원대상으로,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예산 교부 당해연도 공사 착공 가능 시설에 단년도 지원하고, 기반시설의 직접 사업비로 사용하도록 하며, 특화단지 투자규모 및 지역을 고려하여 총 사업비의 최대 30%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하는 내용임

< 특화단지 기반시설 국비 지원 비율 >

구 분	기업 투자 규모별			비수도권	수도권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上 구간	100조원 이상	30조원 이상	10조원 이상	30%	25%
中 구간	10~100조원	3~30조원	1~10조원	25%	20%
下 구간	10조원 미만	3조원 미만	1조원 미만	20%	15%

지원 연도	구 분	예산 지원액	지원 항목
'23년	용인·평택	1,000억원	■ 용인·평택 일반산단 변전소·송전선로 (500억원) ■ 용인·평택 일반산단 용수관로 (500억원)
'24년	구 미	200억원	■ 구미대교 신축 (200억원)
	포 항	154억원	■ 영일만산단 정수장 증설 및 용수관로 (154억원)
	울 산	38억원	■ 하이테크밸리 변전소·송전선로 (38억원)
	새만금	47억원	■ 용수·폐수 관로 (47억원)
합 계		1,439억원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은 대규모 시설투자가 불가피한 장치산업으로서 전력·용수·폐수 등 산업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도, 현행법상 지원이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어 미국·중국·대만 등 주요국 대비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국가첨단전략산업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를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50퍼센트 이상을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과 같이 사업자에게 산업기반시설의 설치·운영 비용의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경우, 사업자의 재무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원가 경쟁력 확보 및 투자 활동을 지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한편, 동 사안은 법률을 통해 의무적으로 국가 재정을 투입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재량지출이 아닌 의무지출로 전환됨에 따른 재정 부담에 대한 고려와 함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법률개정 여부 및 구체적인 보완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비용지원 대상 시설의 종류에 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기반시설⁵⁾”의 설치 또는 운영 비용을 의무지원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동법 시행령 제31조는 가스공급시설, 도로, 용수공급시설, 전기공급시설, 집단에너지공급시설,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통신시설, 특화단지의 공동구(共同溝), 공동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 및 설비 등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어 의무적 비용 지원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

5)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20조(특화단지 조성·운영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화단지 조성·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개정 2022. 12. 31.>

1. 특화단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반시설(천재지변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이중화 시설을 포함한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2. 그 밖에 특화단지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후략)

동법 시행령

제31조(특화단지 조성·운영 지원) ①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반시설(천재지변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이중화 시설을 포함한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인프라를 말한다.

1. 가스공급시설
2. 도로
3. 용수공급시설
4. 전기공급시설
5. 집단에너지공급시설
6. 폐기물처리시설
7. 폐수처리시설
8. 통신시설
9. 특화단지의 공동구(共同溝)
10. 공동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 및 설비
11. 그 밖에 특화단지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공공시설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시설

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비용지원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반영하려는 경우에는, 비용지원의 대상을 “전기공급시설, 용수공급시설” 등으로 구체적으로 한정하거나, 대통령령 등 하위규정에 의무적인 비용지원 대상을 별도로 정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둘째, 비용지원 적용 대상을 시점 기준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비용지원 적용 대상을 개정안 시행 이후 신규로 설치하는 산업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하는지 또는 이 법 시행 이후('22. 8월) 설치한 모든 시설 또는 현재까지 비용을 지원하지 않은 시설을 포함하는지 여부 등을 적용례를 통해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현재까지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직접 산업기반시설을 설치하였거나 설치를 확정된 규모는 정부가 재정지원 대상으로 파악한 전력 및 용수 시설만을 기준으로 할 때 총 2조 3,238억원 수준으로 지원 대상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 소요예산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

예를 들어 '25년부터 설치하는 산업기반시설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총 설치비용 580억원(청주 146억원, 새만금 434억원)의 50%인 290억원 또는 70%인 406억원 등이 필요한데 반해, '22년 동법

시행 이후 기 지원한 용인·평택 특화단지 전력·용수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1조 1,619억원(50%)에서 1조 6,267억원(70%) 등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⁶⁾.

[표 3] 특화단지 사업자가 직접 설치하는 산업기반시설 사업비

지원연도	특화단지	기반시설	총사업비	국비	민간
23년	용인·평택	전력	1조 1,673억원	500억원	1조 1,173억원
		용수	1조 809억원	500억원	1조 309억원
24년	울산	전력	176억원	37.5억원	176억원
25년	청주	전력	146억원	36.6억원	109억원
	새만금	전력	434억원	108.5억원	326억원

주1: '25년 국비 지원 규모는 정부 예산안 기준

주2: 전략산업등 영위 기업이 직접 공시, 보도자료 등을 통해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설치·운용 금액을 발표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기준」에 따른 지원대상에 한정하여 집계된 금액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셋째, 개정안은 비용을 의무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용지원의 절차 등을 대통령령 등 하위규정을 통해 구체화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담 기준도 불분명하므로 이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반시설에 대한 비용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산업기반시설은 시설의 종류, 지리적 위치와 여건

6) 현재까지 사업자가 직접 산업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확정된 사업 기준이며, 이후 추가적인 설치 계획이 확정되는 경우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하게 됨.

등에 따라 설치·운영에 수반되는 비용과 재정 지원이 필요한 범위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지원비율 등 구체적 사항은 법에서 정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으므로, 지원금의 비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시 등 하위법령으로 위임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임.

기획재정부는 국비보조율은 기업활동 촉진, 기업 책임성, 재정여건, 공공기관의 역할, 사업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보조금 관리법도 기준보조율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률에 의무 지원비율을 규정하는 것은 곤란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임.

한편, 현재 유사 취지의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⁷⁾이 우리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므로 법안 심사 시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7) 유사 취지의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음과 같음

의안번호, 발의의원	주요내용(조항)	발의일	심사경과
2202097, 이병진의원안	국가첨단전략산업 영위 사업자가 산업기반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경우, 국가·지자체가 그 비용의 50% 이상을 의무 지원 (안 제20조제3항 신설)	'24.7.22	산중위 ('24.9.26. 전체회의 상정)
2201232, 이상식의원안	국가첨단전략산업 영위 사업자가 산업기반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경우, 국가·지자체가 그 비용의 70% 이상을 의무 지원 (안 제20조제3항 신설)	'24.7.1	산중위 ('24.9.26. 전체회의 상정)
2200653, 김한규의원안	국가첨단전략산업 영위 사업자가 산업기반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경우, 국가·지자체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지원금의 한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20조제3항 신설)	'24.6.27.	산중위 ('24.8.19. 전체회의 상정, '24. 8. 20. 소위 심사)

문 의 처
02)6788-5460